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 시행규칙은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특수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한 내용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각 특수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 학

제 3 조 (응시자 구비서류) 특수대학원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 4 조 (입학전형)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 자격여부 및 출신대학의 학부성적
2. 면접 및 구술시험 :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정도, 지식의 깊이를 문답을 통해 시험한다.

제 5 조 (입학전형절차) 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요강을 확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 ② 입학전형위원은 각 학과별 2명 이상의 교수로 구성하며, 학과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 ③ 대학원장은 출신대학 성적과 면접, 구술시험의 결과를 수합하여 사정자료를 작성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 6 조 (사정원칙) 사정원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조 (재입학) ①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납부금 미납으로 제적된 자 중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재입학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재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제적 전의 수료학기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8 조 (편입학 지원자격) 편입학을 지원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편입 전 대학원에서의 정규등록 학기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 원 자 격	
		정규등록 학기 수	이 수 학 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이상

제 9 조 (편입학 전형)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방법에 준하여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 전 대학원의 학점은 해당학과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까지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제11조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12조 (합격자의 결정과 합격 통지서) 대학원장은 입학 또는 편입학 사정자료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서를 발부한다.

제13조 (입학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통지서를 받은 입학자와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소정 기일 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맞춰야 한다.

② 입학 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일부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14조 (합격취소) 총장은 합격자 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와 등록미필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등록·휴학·복학

제15조 (등록) ① 학생은 학칙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 제10조제2항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에 따라 정규등록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 5. 14)

② 수강신청학점 수에 따라 정규등록금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학점등록이라 한다.(신설 2019. 5. 14)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연구등록이라 한다.(신설 2019. 5. 14)

1. <삭제 2019. 5. 14>

2. <삭제 2019. 5. 14>

3. <삭제 2019. 5. 14>

제16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였으나 미수료인 상태에서 교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14)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제16조의 2 (연구등록) 대학원생은 수료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는 학기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14)

제17조 (휴학) ① 정규등록을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는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의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제18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7조 ②항 해당자로서 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이 있을 경우 차액분만을 납부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19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개정 2019. 5. 14)

② 대학원 공통필수인 공통교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18조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한

다.(신설 2019. 5. 14., 개정 2023. 2. 6.)

③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통과목 이수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5. 14)

④ 제2항의 공통교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수업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2. 6.)

1. 논문작성법(3학점)
2. 벤처정신과 혁신(2학점)

제20조 (개설 교과목수와 수강 학생 수) ① 학과별 재학생 수에 따라 매 학기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수와 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5. 14)

재학생수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50명	51명이상
교과목수	5	6	7	8	9
학 점 수	15	18	21	24	27

②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생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3. 1)

③ 제2항에 따라 폐강이 예정된 과목이 운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담당 전임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3. 1)

제21조 (교과목설정의 변경) 설정된 교과목의 변경은 주임교수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6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통합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5. 14)

제22조 (수강교과목신청 및 시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개강 일주일 전까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수학점) 학생의 수강신청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

[제목개정 2018. 3. 1]

제24조 (수강교과목 변경) 수강신청변경은 수강한 교과목을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교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교과목 담당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담당교수 제청) ① 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는 전년도 12월말, 2학기는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② 주임교수는 신규강사 제청 시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담당교과목수의 제한)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교과목수는 1과목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학과교수회의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동일계열 내에서 둘째 학기말까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은 신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전공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전공변경원과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시험 및 성적

제28조 (교과목 성적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시험의 성적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교과목 성적의 정정)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누락 등 착오가 있을 경우, 해당교수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해당시험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 시 학점은 말소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수강을 신청하는 필수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대학원장이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수료증의 발급)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32조 (시험부정행위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장 학 사 지 도

제33조 (주임교수) 각 특수대학원의 학과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각 특수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사절차의 관장
2. 학과교수회의 소집 및 관장
3. 학위논문지도교수 및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제청
4. 기타 학과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35조 (학과교수회의) ① 구성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관사항

1. 학과내규 제정·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및 학과시험의 출제와 출제위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5. 신규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소집 : 학과교수회의는 대학원장 및 소속교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학과 주임교수가 소집한다.

④ 의결 :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②항 1호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보고절차 : 관장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쳐 각 학과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⑥ 학과내규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을 내규로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장 외국인 학생 및 정원 외 학생

제36조 (전형인원) 각 학과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교포 및 재외국민 자녀에 대하여는 학칙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적정인원을 전형할 수 있다.

제37조 (전형절차) 정원 외 입학자는 서류심사, 면접시험에 의해 전형할 수 있다. 다만,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시험을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제 8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8조 (공개강좌) 각 특수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 (전형위원 및 절차) 각 학과의 적정인원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0조 (연구생 지원서류) 각 학과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최종 학력증명서로 한다.

제41조 (연구생의 연구연한)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연구생의 실적증명 발급) 연구생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증명을 발급한다.

제 9 장 외 국 어 시 험 <삭제 2014. 4. 21>

제 10 장 종 합 시 험

제49조 (응시자격) ①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2018. 12. 12)

1.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글로벌창업대학원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② 각 특수대학원별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50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① 종합시험은 5월, 11월에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 불합격한 자는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매학기 과목별로 재응시할 수 있다.

제51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

제52조 (출제위원 및 출제) ①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제위원은 학과별 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제53조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각 과목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 11 장 학 위 논 문

제54조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제4학기 등록 1개월 이내에 주임교수가 제청한다. (개정 2014. 4. 21)

제55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21)

-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수
- ② 총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56조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삭제 2019. 5. 14>

제58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1, 2018. 3. 1)

1.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4. 4. 21, 2018. 3. 1, 2018. 12. 12)
3.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후 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
4. 학칙 제22조에 따른 정규등록을 마치고 2학기(글로벌창업대학원은 1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14. 4. 21, 2018. 3. 1)

제59조 <삭제 2018. 3. 1>

제60조 (학위논문제출 신청절차) 학위논문 제출신청자는 해당학기의 지정 기일 내에 다음의 구비사항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 나. 논문심사위원 위촉제청서 1부
- 다. 논문지도 보고서 1부
- 라. 심사용 논문 3부
- 마. 논문 심사료

제61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한다.

제62조 (학위논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63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학위논문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 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 (학위논문 예비심사) ① 주임교수는 학위논문을 접수한 즉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 일정을 통지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 ② 학위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1회 이상 논문 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부분, 역본, 모형,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 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65조 (학위논문 본 심사) ① 본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각 전공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행한다.

- ② 본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66조 (학위논문 합격판정) 학위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67조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8조 (학위논문의 재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 제출자는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 절차는 제65조, 제66조에 준한다.

제69조 (학위논문 제출) 논문 제출자는 학위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후 최종논문 파일을 한국교육학술

정보원(KERIS)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2019. 5. 14., 2023. 2. 6.)

제 12 장 보 칙

제70조 (준용규칙) 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호서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코칭능력개발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학칙 시행규칙은 폐지된다.

제3조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대학원의 구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14)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교과목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공통교과목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논문작성법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를 이수할 수 있다.

제3조 (연구등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16조의 2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연구등록금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6)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교과목 이수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 및 신설 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공통교과 이수 대상자
부터 적용한다.